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전담부서 설치·운영 〉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09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전담부서 설치·운영(안 제13조의2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수현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5. 27.

다. 회 부 일 : 2025. 5.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수립·추진과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생태계 구축 및 전국화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한 실정이나 부서 신설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문화예술 지원 제도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13조의2 신설).

1.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전담부서 설치·운영(안 제13조의2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부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3조의2(전담부서의 설치·운영)</u>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6월 9일에 제정되어, 같

은 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이후 2022년에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 정례화 등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음. 아울러, 관련 예산(일반회계 기준)도 2013년 42억원에서 2025년 307억 8,400만원 으로 7배 이상 증가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조직인 ‘장애인문화예술과’(정원 7명)를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식 조직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직제 신설이 반영되지 않아 현재는 예술정책과 내 장애인문화예술팀(2명)을 통해 관련 업무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책 수요와 제도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전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예산과 사업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담부서 부재는 정책의 전문성, 연속성, 대응 속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아울러,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된 유사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된 유사입법례]

법률명	조문내용(조항)
학교도서관 진흥법 (제18547호)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도서관법 (제20834호)	제20조(업무)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204호)	제6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① 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재조사의 실시 및 조사결과 분석·관리 2. 화재조사 관련 기술개발과 화재조사관의 역량증진 3. 화재조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4. 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⑤ 전담부서의 구성·운영, 화재조사관의 구체적인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부수용 입장이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설치 및 사무분장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별도 전담부서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에 따라 소관 업무의 양이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여러 부서로 분담해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같은 통칙 제4조에 따라 직제 개정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기획재정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직제 신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법 체계상 부적절함. 특히, 전담부서의 설치여부는 업무의 분량 등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 1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주요내용

5대 전략 및 10대 과제 추진	
(전략 1)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	
	① (창작지원 다각화) 지원방식 다양화,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창작 활동 공간 확충, 지역 및 청년 장애예술인 활동 활성화
	② (예술시장 진출 및 창작물 유통 활성화) 대표 공연 지원, 공공 기관 우선 구매,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활성화, 국제 대표 축제 참여 지원
(전략 2) 장애예술인 일자리 등 자립기반 조성	
	① (공공영역의 일자리 확대) 기간제법 예외 적용으로 고용 안정화, 장애인예술단 등 일자리 확대, 중증장애예술인 권리형 일자리 창출, 예술강사 등 확대
	② (민간영역의 일자리 확대) 고용인정제도 도입, 고용 인센티브 발굴, 창업 지원,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현장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전략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	
	① (문화시설 및 공간 접근성 강화) 표준 공연장 조성, 문화시설 접근성 매뉴얼 제작·보급,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 및 전시 의무화
	②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대국민 인식 개선) 온라인 접근성 지원, 장애인문화예술정보시스템 개선, 장애예술인 통합지원센터 운영, 직장내 인식 개선 교육에 장애예술인 참여, 콘텐츠 제작 및 보급
(전략 4) 장애예술인 지원정책 기반 조성	
	① (지원체계 정비) 장애예술인 정책 거버넌스 형성, 정책 전담 인력 확충,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활성화
	② (정책연구 및 신기술 컨버전스 촉진) 선진사례 연구 및 실태 조사, 신기술 활용 융복합 예술 개발, 맞춤형 교육 지원, 인공지능 창작지원도구 개발
(전략 5)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지원	
	① (양성교육 체계화) 장애인 학생 입문형 예술교육 확대, 예술 전공 장애인 대학생 지원, 심화교육 지원
	②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장애예술인 매개인력 양성, 예술시장 전문인력 양성, 대학 등에 장애인예술 교육과정 확대

참고 2

기본계획에 따른 신설 제도

□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 **(내용)**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상기관)** 2025년 기준으로 국가기관 61개*(하위기관을 포함하는 최상위기관 개수), 지방자치단체 436개 및 공공기관 347개 등 기관 대상

* 국가기관 중앙부처의 소속기관도 우선구매 대상

- **(창작물 범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미술품

구분	창작물의 정의
공예품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 (공예진흥법 제2조 2호)
공연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 (공연법 제2조)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공연법 제2조 1호)
미술품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상 미술작품의 예시 규정 참고

- **(추진체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누리집을 통해 중개 업무수행

□ 국공립 공연장 정기 공연·전시 의무화 제도

- **(내용)** 국공립 문화시설 중 등록 공연장·미술관에서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 **(대상)** 공연장 보유시설 442개소, 미술관 보유시설 75개소

- (실시 주기) 연 1회 이상으로 하되, 공연장·미술관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구분	공연	전시	비고
공연장 n개 (전시시설 有)	공연·전시 합쳐서 2회 이상		부담 완화 차원 (미술관≠전시시설)
공연장 n개 (전시시설 無)	2회 이상	-	
공연장 1개	1회 이상	-	
미술관 1개	-	1회 이상	
공연장, 미술관 각각 보유	1회 이상	1회 이상	실제 사례 없음

- (인정 범위) 기획 공연·전시뿐 아니라 대관 실적도 인정